
2025년(2주기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2025.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목 차

I. 평가개요	1
1. 평가배경 및 목적	
2. 추진경과	
II. 평가내용	2
1. 평가대상	
2. 평가기준	
3. 평가자료 및 방법	
4. 평가결과 활용	
III. 향후계획	4

〈별첨〉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I. 평가개요

1. 평가배경 및 목적

-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평가를 도입
-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요양병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2. 추진경과

- ('07. 10.) 요양병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요청(보건복지부)
- ('08.~'18.) 1주기 1~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3차('10.) 평가결과의 수가연계 도입
 - ※ 하위 20% 기관 환류적용: 인력가산 배제
 - 5차('13.) 구조* 항목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관
 - * 시설·장비·환자안전 16지표
- ('17.~'18.) 평가 개선방안 연구¹⁾ 및 2주기 평가 개편²⁾
- ('19.~'24.) 2주기 1~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실시
 - 3차('21.) 평가 대상기간(3개월 → 6개월) 확대
 - 수가연계 질지원금 및 하위 5% 기관 환류 적용(고시 제2021-59호)
- ('23.~'25.) 2주기 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
 - 신뢰도 점검 도입(기간: '24.3.~6.), 평가결과 공개('25.6. 예정)
- ('24.~'26.) 2주기 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추진
 - 평가세부계획 공개(4월) 및 설명회(5월) 실시
 - ※ 진료지표 총 9개 중 7개(욕창, 유치도뇨관 등) 지표 개선(신설·변경)
 - 신뢰도 점검 수행(기간: '25.3.~7.)
- ('25. 2.) 2주기 7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분과위원회 개최
- ('25. 4.) 2주기 7차 평가 세부시행계획(안)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

1)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서영준, 노용균 외, 2017.)

2)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 진료중심의 핵심지표로 구성(총 37개→18개 지표), 지표별 가중치 사전 공개로 평가 방향성 및 예측성 확보, 평가결과공개 주기 단축(2년→1년)

II. 평가내용

1. 평가대상

-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³⁾
 - '25년 7월 1일 전 개설하여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속 운영 중인 기관
- (대상기간) '25년 7~12월(6개월) 입원진료분(건강보험·의료급여·보훈 진료분)
 -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PD)은 '25년 7월~'26년 6월(12개월) 입원진료분

2. 평가기준

- (평가지표) 총 17개(평가지표 13개, 모니터링지표 4개)
 - * 세부내용 <표> 참조

3. 평가자료 및 방법

- (평가자료)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구조영역),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환자평가표,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DUR자료, 의료자원 통계자료, 신뢰도 점검자료*(진료영역)
 - * 환자평가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의무기록 대조 확인
- (평가방법) 기관별 지표 결과 산출 및 표준화,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및 등급화
 - ※ 평가등급 구간 등은 종합점수 산출 후 평가분과위원회 및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3)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및 호스피스 정액입원 대상 건 제외

<표: 2주기7차 평가지표 및 가중치>

구분	지 표 명		가중치
구조 영역 (4)	구조영역 소계		30
	의사 1인당 환자수		8.5
	간호사 1인당 환자수		8.5
	간호인력 1인당 환자수		7.5
	약사 재직일수율		5.5
진료 영역 (9)	과정 (4)	진료영역 소계	70
		과정지표 소계	14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6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3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	3
	결과 (5)	욕창 처치를 실시한 환자분율	2
		결과지표 소계	56
		욕창 관리 환자분율	22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12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12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5
		지역사회 복귀율	5
모니 터링 (4)	최면 · 진정의약품 처방률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 여부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별첨> 참조

** 모니터링 지표는 종합점수 산출시 제외되므로 가중치 부여 없음

4. 평가결과 활용

- (대 국민) 평가결과 대국민 홍보 및 요양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요양기관) 자율적 질 향상을 위한 평가결과 안내 및 질 향상 지원 활동
- (유관기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평가결과 제공
- (수가연계) 평가결과 연계 질지원금 및 평가결과 환류 적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2021.2.25.)】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1)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

- (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인 경우는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를 별도 산정한다.
- (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상위 10%를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인 경우는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별도 산정한다.
- (다)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4등급 이상 이면서, 종합점수가 직전 평가 대비 5점 이상 향상된 경우에는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별도 산정한다.
- (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은 적정성 평가결과 발표 익월부터 다음 평가 결과 발표 월까지 산정한다.

(2)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환류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가 하위 5%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III. 향후계획

- ('25. 4.~5.) 2주기 7차 세부시행계획 공개 및 요양기관 설명회
- ('25. 7.~12.) 2주기 7차 평가대상 기간
 - ※ 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PI): '25년 7월~'26년 6월(12개월)
- ('26. 1.~27. 5.) 2주기 7차 평가수행(자료분석 및 평가결과 심의)
- ('27. 6.) 2주기 7차 평가결과 공개(예정)

※ 진행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평가지표 정의 및 산출식

평가지표1	의사 1인당 환자 수
정 의	대상기간 동안 의사 1인당 평균 환자 수
산출식	$\frac{\text{대상기간 동안 평균 환자 수}}{\text{대상기간 동안 평균 의사 수}}$
선정근거	○ 「의료법」 상 최소인력이 규정되어 있는 의사에 대한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중심의 치료와 체계적 간호, 의약품 안전관리 등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인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2025년 3, 4분기 신고내역 반영 ※ 2025년 4분기 및 2026년 1분기 적용분

평가지표2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정 의	대상기간 동안 간호사 1인당 평균 환자 수
산출식	$\frac{\text{대상기간 동안 평균 환자 수}}{\text{대상기간 동안 평균 간호사 수}}$
선정근거	○ 「의료법」 상 최소인력이 규정되어 있는 간호사에 대한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중심의 치료와 체계적 간호, 의약품 안전관리 등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인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2025년 3, 4분기 신고내역 반영 ※ 2025년 4분기 및 2026년 1분기 적용분

평가지표3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1인당 환자 수
정 의	대상기간 동안 간호인력 1인당 평균 환자 수
산출식	$\frac{\text{대상기간 동안 평균 환자 수}}{\text{대상기간 동안 평균 간호인력 수}}$
선정근거	○ 「의료법」 상 최소인력이 규정되어 있는 간호인력에 대한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중심의 치료와 체계적 간호, 의약품 안전관리 등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인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2025년 3, 4분기 신고내역 반영 ※ 2025년 4분기 및 2026년 1분기 적용분

평가지표4	약사 재직일수율
정 의	대상기간 전체 일수 중 약사가 재직한 일수의 비율
산출식	$\frac{\text{대상기간 동안 약사 재직일수}}{\text{대상기간 전체 일수의 합}} \times 100$
선정근거	○ 「의료법」 상 최소인력이 규정되어 있는 약사에 대한 최소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중심의 치료와 체계적 간호, 의약품 안전관리 등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인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2025년 3, 4분기 신고내역 반영 ※ 2025년 4분기 및 2026년 1분기 적용분

평가지표5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들
--------------	-----------------------

정 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월별 14일을 초과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들
산출식	$\frac{14\text{일 초과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text{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times 100$
선정근거	○ 장기간의 유치도뇨관 사용은 요로감염, urosepsis 및 비뇨기계통의 물리적 손상, 사회심리적인 문제 등 다양한 측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기관 편의를 위해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지 파악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환자군 통합운영) 기관 내 고위험군/저위험군 환자 구성비를 반영하여 하나의 표준화된 지표로 운영 ※ 환자군 분류 • (고위험군) - 변실금 (환자평가표 기준에 따라 대변조절상태 항목이 ‘조절 못함’ 인 경우) - 3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경우 - ‘혼수’ 이면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모든 항목이 ‘전적인 도움’ 이상인 경우 - 사지마비 또는 하지마비 또는 척수손상인 경우 • (저위험군)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제외기준	○ 환자평가표의 평가구분이 ‘입원평가’ 인 경우 ○ 해당 월 평가 ‘의료최고도’ 인 환자

평가지표6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	--------------------

정 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 ※ 처방지표(PI, Prescription Index): 해당 기관의 질환에 대한 환자구성을 감안했을 때 처방률과 전체 기관의 처방률을 비교한 지표
산출식	$PI_h = \frac{\sum_g (P_{hg} \times n_{hg})}{\sum_g (P_g \times n_{hg})}$ h : 대상 요양기관 g : 상병 (주상병 기준) n_{hg} : 대상 요양기관의 상병별 환자 수 P_g : 상병별 처방률 P_{hg} : 대상 요양기관의 상병별 처방률 PI_h : 대상 요양기관의 처방지표
선정근거	○ COVID-19 발생 이후, 부족한 간병 인력을 대신한 항정신병제 및 수면진정 약물 남용에 대한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을 파악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항정신성의약품) Amisulpride, Aripiprazole, Blonanserin, Chlorpromazine, Clozapine, Haloperidol, Levomepromazine, Olanzapine, Paliperidone, Perphenazine, Pimozide, Quetiapine, Risperidone, Sulpiride, Ziprasidone, Zotepine

평가지표7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
--------------	----------------------------

정 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전체 원내·외 의약품 처방이 이루어진 실인원수 대비 DUR점검이 이루어진 실인원수의 비율
산출식	$\frac{\text{월별 DUR 점검 실인원수}}{\text{월별 원내·외 처방 실인원수}} \times 100$
선정근거	○ 의약품을 처방하고 조제할 때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 제공 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인 DUR을 통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을 막고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관리를 평가 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자료

평가지표8	욕창 처치를 실시한 환자분율
-------	-----------------

정 의	욕창환자 중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를 실시한 환자분율
산출식	$\frac{\text{해당 월 평가에서 피부문제 처치를 실시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 평가에서 1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환자}} \times 100$
선정근거	○ 욕창은 노인·장기입원 환자의 합병증 유발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발생한 욕창에 대한 적절한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피부문제에 대한 처치) 압력을 줄여주는 도구 사용, 체위변경, 피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양공급, 피부궤양 드레싱을 의미하며 4가지 모두 수행한 경우

평가지표9	욕창 관리 환자분율
-------	------------

정 의	전월에 비해 욕창이 새로 생기거나 개선된 환자분율 ※ (적용비율) 세부지표 ① : 세부지표 ② = 2 : 8
세부지표	①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② 욕창 개선 환자분율
선정근거	○ 욕창(압박성 궤양)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이 있고, 회복이 더디며, 피부와 뼈의 감염증과 같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체위변경을 자주하여 신체에 압력이 집중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욕창에 대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지표로 선정함

평가지표9	욕창 관리 환자분율
세부지표①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정 의	전월에 비해 2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산출식	$\frac{\text{해당 월 평가에서 2단계 이상의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해당 월과 전월 모두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 \times 100$
세부기준	○ (고위험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체위변경하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안함’ 인 경우 • 일어나 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안함’ 인 경우 • 옮겨앉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안함’ 인 경우 • 방밖으로 나오기가 ‘상당한 도움’ 이상이거나 ‘행위 발생안함’ 인 경우 ○ (새로 생긴 욕창) 이전 평가 이후 새로 발생한 2단계 이상 욕창(압박성 궤양) 존재여부를 의미

평가지표9	욕창 관리 환자분율
세부지표②	욕창 개선 환자분율

정 의	전월에 비해 2단계 이상의 욕창이 개선된 환자분율
산출식	$\frac{\text{해당 월 평가 욕창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 평가에서 2단계 이상의 욕창이 있는 환자}} \times 100$
세부기준	○ (욕창개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총 개수가 줄어든 경우 •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최고단계가 낮아진 경우 ○ (욕창악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총 개수가 늘어난 경우 • 전월에 욕창이 있던 상태에서 욕창 중 최고단계 욕창이 더 심해진 경우
제외기준	○ 욕창의 개선과 악화가 모두 발생한 경우

평가지표10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	------------------------------

정 의	전월에 비해 일상생활수행능력이 개선된 환자분율
산출식	$\frac{\text{해당 월 평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text{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times 100$
선정근거	○ 일상생활수행능력 개선을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결과를 평가할 수 있고, 환자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건강상태 및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ADL 개선) 환자평가표 기준에 따라 10개 ADL 항목 총점이 2점 이상 감소한 경우
제외기준	○ 전월 평가에 10개 ADL의 값이 모두 ‘완전자립’ 이거나 ‘감독필요’ 인 경우 ○ 전월과 해당 월 평가 모두 ‘의료최고도’ 이거나 ‘선택입원군’ 환자

평가지표11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	--------------------------------------

정 의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인 환자분율
산출식	$\frac{\text{최근 3개월 이내 HbA1c 검사결과가 적정범위인 환자}}{\text{해당 월 평가를 받은 당뇨병 환자}} \times 100$
선정근거	○ 당뇨병은 노인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합병증 예방의 효과가 크고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혈당 관리는 해당 병원의 서비스 질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당뇨병 환자의 적극적인 혈당조절을 권고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질환 관리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당뇨병 환자) 청구명세서에 당뇨상병(E10~E14)이 있거나, 환자평가표의 당뇨에 체크된 경우 ○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4\% \leq \text{HbA1c} < 8.5\%$
제외기준	○ (분모) 최초입원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경우 ○ (분자) 검사결과가 없거나, 검사일자가 환자평가표 작성일 이후인 경우

평가지표12	장기입원 [181일 이상] 환자분율
---------------	----------------------------

정 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입원환자 중 입원기간이 181일 이상인 환자분율
산출식	$\frac{\text{입원기간이 181일 이상인 환자}}{\text{평가대상기간 동안 입원중인 환자}} \times 100$
선정근거	○ 병원에서 장기입원은 노인에게 있어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기능저하를 가져와 사망의 위험을 높임. 이처럼 과도한 장기입원은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요양병원의 병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입원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181일 이상 입원) 일당 정액수가 및 입원료 산정기준에 따름
제외기준	○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중도 환자

평가지표13	지역사회 복귀율
---------------	-----------------

정 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퇴원한 환자 중 ‘자택·시설로 퇴원한’ 환자분율
산출식	$\frac{\text{자택·시설로 퇴원한 환자}}{\text{평가대상기간 동안 퇴원한 환자}} \times 100$
선정근거	○ 요양병원에서 퇴원 후 다른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은 요양병원 진료의 질이 우수하였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입원환자 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의 목적에 부합하므로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자택·시설로 퇴원한 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퇴원일 포함) 요양기관 입원내역이 없는 환자 ○ (퇴원 환자) 청구명세서 진료결과구분이 ‘9. 퇴원 또는 외래치료 종결’ 인 경우
제외기준	○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또는 의료중도 환자 ○ 퇴원 후 30일 이내(퇴원일 포함) 사망한 환자

모니터링지표1	최면 · 진정의약품 처방률
----------------	-----------------------

정 의	평가대상기간 동안 최면 · 진정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
산출식	$\frac{\text{최면 · 진정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text{해당 월 평가를 받은 환자}} \times 100$
선정근거	○ COVID-19 발생 이후, 부족한 간병 인력을 대신한 항정신병제 및 수면진정 약물 남용에 대한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면·진정의약품 처방률을 파악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최면 · 진정의약품) Alprazolam, Bromazepam, C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nazepam, Clotiazepam, Diazepam, Doxepin, Eszopiclone,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idazolam, Pentobarbital, Phenobarbital, Thiopental, Triazolam, Zaleplon, Zolpidem

모니터링지표2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 여부
----------------	------------------------------

정 의	환자지원팀 인력의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 이수 여부
산출식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 이수 여부
선정근거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증가 및 요양병원에 대한 진료비 관리 필요성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 입원 억제를 통해 입원환자의 퇴원-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요양기관의 지역사회 연계 노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 고시 제2023-230호(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에 의거,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환자지원팀 중 1인 이상이 이수한 ‘퇴원환자 지원 기본교육’ ○ (교육 이수 여부) 심사평가원에 신고된 교육 수료증 적용종료일자가 대상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한 경우

모니터링지표3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
----------------	-----------------------

정 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중 요로감염이 있는 환자분율
산출식	$\frac{\text{요로감염이 있는 환자}}{\text{해당 월 평가에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times 100$
선정근거	○ 의료기관의 감염발생은 의료서비스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환자 치료 및 간호 시 요로감염은 중점 관리대상이므로 지표로 선정함

모니터링지표4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	--------------------------

정 의	전월 중등도 이상 통증이 있는 환자 중 통증이 개선(감소)된 환자분율														
산출식	해당 월 평가 통증이 전월 평가보다 개선된 환자 해당 월 평가와 전월 평가를 모두 받은 환자 중 전월 평가에서 중등도 이상의 통증이 있는 환자 × 100														
선정근거	○ 통증 경감은 환자의 삶의 질에 중요하고, 의학적으로 조절이 필요한 증상으로 요양병원의 치료노력과 환자 건강상태 증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로 선정함														
세부기준	○ (중등도 이상의 통증) 중등도의 통증 또는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 경우(NRS, VAS 4~10점 또는 FPS 3~5단계) ○ (통증 개선(감소)) • 통증 강도 및 발생 빈도 분류에 따라, 「통증의 강도 또는 발생 빈도」가 줄어든 경우 • ‘강도(빈도)의 개선과 빈도(강도)의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개선으로 판단하지 않음 ※ 참고 • (통증 강도 분류) <table><tr><th rowspan="2">통증강도</th><th colspan="2">구분</th></tr><tr><th>NRS, VAS</th><th>FPS</th></tr><tr><td>경미한 통증 또는 통증 없음</td><td>0, 1, 2, 3</td><td>0, 1, 2</td></tr><tr><td>중등도의 통증</td><td>4, 5, 6</td><td>3</td></tr><tr><td>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td><td>7, 8, 9, 10</td><td>4, 5</td></tr></table> • (통증 발생 빈도 분류) 통증 없음, 통증 있으나 매일은 아님, 매일 통증이 있음	통증강도	구분		NRS, VAS	FPS	경미한 통증 또는 통증 없음	0, 1, 2, 3	0, 1, 2	중등도의 통증	4, 5, 6	3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	7, 8, 9, 10	4, 5
통증강도	구분														
	NRS, VAS	FPS													
경미한 통증 또는 통증 없음	0, 1, 2, 3	0, 1, 2													
중등도의 통증	4, 5, 6	3													
격렬하거나 참을 수 없는 통증	7, 8, 9, 10	4, 5													